

[사 건 명] 행심 2015-14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02.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02. 23. ‘◇◇교육지원청 직원 및 직계존비속 중 ■■■도 ■■■군 있는 ■■■ 폭포에서 성폭행(강간)을 당하고 신고한 내역서 및 각 개인별 성명·나이·주소, ■■■군의원 ●●●가 ◇◇교육지원청 직원에게 성폭행(강간) 사건으로 고소당한 내역서, ■■■군의원 ●●●가 관광지 성폭력(강간) 사건 피해자 위로 등을 위한 출장사무내역서·출장비 집행내역서·사용내역서·사용영수증, ■■■군의원 ●●●가 2014년 민선6기 선거보전비로 신청한 32,114,870원 중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한 선거비 집행내역서·사용내역서·사용영수증’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5. 0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나. 2015. 03. 11.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

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03. 12. 우리위원회로 청구건을 이송하였으며, 2015. 03. 13. 우리위원회에서 접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군청, ■■■경찰서, ○○북부경찰서, ○○지방검찰청의 포악한 사건조작 및 은폐로 인하여 청구인 주변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고 작으나마 이를 알리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기에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고, 2015. 02. 24. 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02.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0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5. 03.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